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69
----------	------

제출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주차요금 결제의 편의성 및 자동차 통행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바로녹색결제를 시영주차장에 도입함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 규정과 요금 징수체계를 마련하고, 그 밖에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차량번호 인식 결제시스템, 주차요금 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1호).
- 나.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단서).
- 다. 바로녹색결제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요금을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제1항제13호 및 부칙 제2조).
- 라.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
- 마.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리자의 재량이 과도하게 부여될 수 있는 감면 대상을 삭제함(안 제23조의2).

- 바. 여성우선주차장의 설치비율을 기계식 주차대수를 제외한 자주식 주차대수 기준으로 규정함(안 제25조의2제1항).
- 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가로를 일반형은 2.3m에서 2.5m로, 확장형은 2.5m에서 2.6m로 확장함(안 별도 제3호 서식).
- 아.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지목을 ‘주차장’으로 한정하였던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2).
- 자. 그 밖에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정비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0. 3. 12.~4. 1.)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교통정비특별법」”을 “「도시교통정비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을 “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주차시간측정계기(차량번호 인식을 통한 결제시스템 및 주차요금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목적지 전철역장 이용확인 혹은 버스현금영수증 등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을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 또는 출차시 정산기를 통해 확인되면”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바로녹색결제시스템(사전에 주차요금 지불 가능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주차요금을 자동 지불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를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을 각각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제23조의2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

호를 각각 삭제한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업무수행 관용차량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시·구의원 차량
3. 행사·회의참석 등 공무로 방문하는 외빈차량 및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로고 부착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보도차량

제25조제1항 본문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주차대수 규모”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1 비고 제7호 중 “교부 받는 주차쿠폰의 요금”을 “주차요금”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바목 중 “「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중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를 “부지”로 한다.

별도 제3호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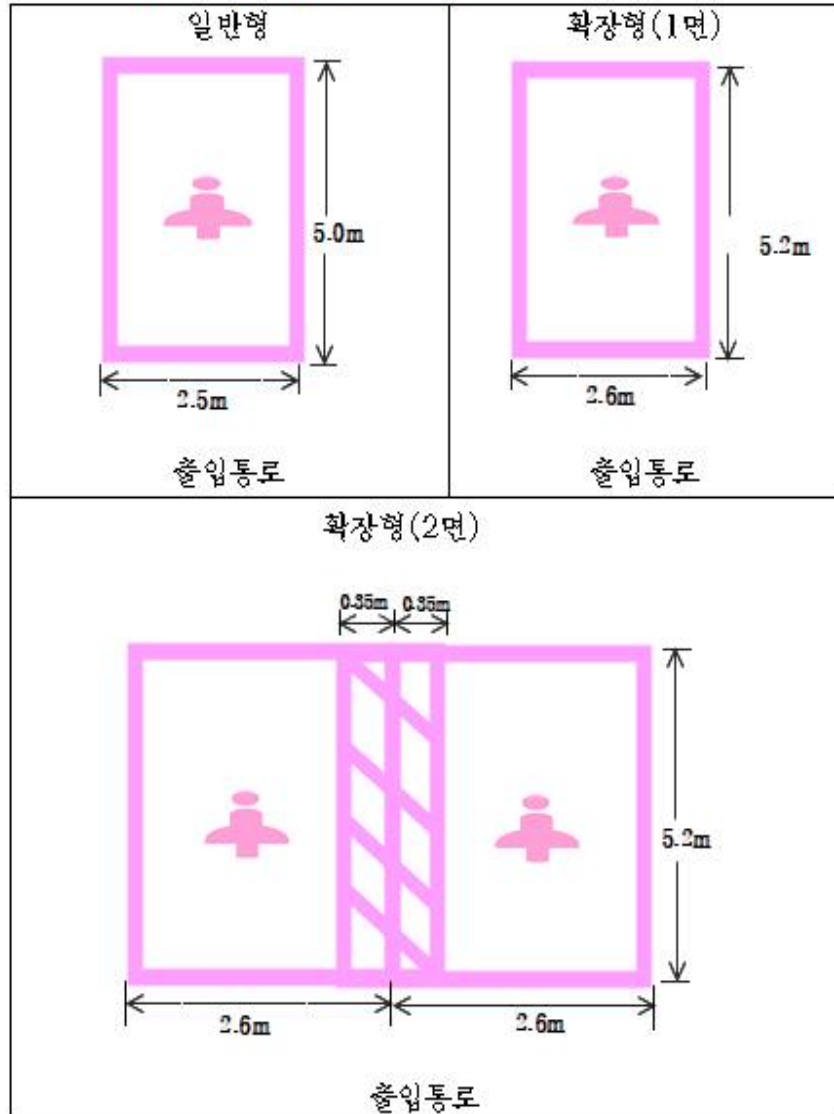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바로녹색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7조제1항제 1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도 제3호 서식]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2제3항 관련)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 [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 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 가.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지: 가로 75cm × 세로 155cm
2. 색채
 -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u>도시교통정비촉진법</u>」,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p> <p>1. 실태조사 대상</p> <p style="margin-left: 20px;">가. (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나. 「주차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p> <p>2. ~ 4.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생략)</p>	<p>제1조(목적) ----- 「<u>도시교통정비 촉진법</u>」-----</p> <p>제3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p> <p>1. -----</p> <p style="margin-left: 20px;">가. (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0px;">나. <u>법 제2조제5호</u>-----</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일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p>	<p>----- ----- ----- ----- ----- ----- -----.</p>
<p>3. (생략)</p>	<p>3. (현행과 같음)</p>
<p>4. 1급지를 제외한 요금금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버스·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시 <u>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목적지 전철역장 이용확인 혹은 버스 현금영수증 등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u>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p>	<p>4. ----- ----- ----- <u>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 또는 출차시 정산기를 통해 확인되면</u> ----- ----- ----- ----- -----</p>
<p>5. ~ 12. (생략)</p>	<p>5. ~ 12.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13. <u>바로녹색결제시스템(사전에 주차요금 지불 가능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주차요금을 자동 지불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u>으로 주</p>

현행	개정안
<p>②·③ (생략)</p> <p>제8조(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해당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해당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해제비용”이라 한다)은 다</p>	<p><u>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삭제></p>

현행	개정안
<p>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의 도시교통권역에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이하 같다)</p> <p>③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u>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u>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p> <p>1. 2. (생략)</p> <p>④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u>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u></p> <p>제23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p>	<p>----- 「도시철도법」제2조제1호-----</p> <p>-----</p> <p>-----</p> <p>③ -----</p> <p>-----</p> <p>-----</p> <p>----- <u>교통영향평가를 실시</u>-----</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 <u>교통영향평가를 실시</u>-----</p> <p>-----</p> <p>-----</p> <p>-----</p> <p>-----</p> <p>제23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p>

현행	개정안
<p>차요금의 감면)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관용차량</u></p> <p>3. <u>외국사절 등 외빈차량 및 언론기관의 보도차량</u></p> <p>4. <u>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차량 중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하는 차량</u></p> <p>5. <u>그 밖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u></p> <p>제25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p>	<p>차요금의 감면)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업무수행 관용차량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시·구의원 차량</u></p> <p>3. <u>행사·회의참석 등 공무로 방문하는 외빈차량 및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로고 부착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보도차량</u></p> <p><삭제></p> <p><삭제></p> <p>제25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p>

[별도 제3호 서식]

현 행	개 정 안
<p><별도 제3호 서식> (개정 2010.11.1)</p> <p style="text-align: center;">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제25조의2제3항 관련)</p> <p style="text-align: center;">- 비 고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이상×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5m이상×세로 5.1m이상)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가. 여성마크(팩트그림) 표기 : 가로 75cm × 세로 155cm 색채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 	<p><별도 제3호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2제3항 관련)</p> <p style="text-align: center;">- 비 고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0.3m이상×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1.6m이상×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가. 여성마크(팩트그림) 표기 : 가로 75cm × 세로 155cm 색채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가. '바로녹색결제시스템' 도입 관련 주차요금의 감면 조항 신설(개정안 제7조의 1항 제13호)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세입) 감소

- 감면적용 유효기간(1년) : '20. 7 ~ '21. 6. 30
- 감면 요율 : 주차요금 100분의 10범위내 할인

2.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세출의 구체적 산정

1) 바로녹색결제 시스템 감면 적용기간(1년), 감면 요율(주차요금 10%)을 100% 적용 시 주차요금 수입 28억원 감소 예측

- '19년 공영주차장 수입금 기준, 바로녹색결제시스템 할인을 10% 적용

감면 추계액(a×b)	'19년 공영주차장 수입금(a)	감면비율(b)
28억원	276억원	10%

※ 바로녹색시스템 감면기간 : '21. 6.30까지 한시적 운영

3. 작성자

-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김은례 (02-2133-2367)